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중심으로 -

한 민 경*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

■ 국 문 초 록

허위영상물은 이미지 기반 성학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대상화(non-consensual sexual objectification)를 그 특성으로 한다. 기술 축진에 힘입어 빠르게 변화하는 이미지 기반 성학대 양상에 발맞추지 못하는 법률과 미디어 플랫폼 규제 지연 상황 또한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생략된 기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목적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은 크게 1) 국회에 발의되었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 비교하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법제 검토와 2) 2020년 3월 24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신설된 이래 지난 4년여간 동조 적용이 검토된 제1심 판결문 124건, 피고인 129명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 실태 분석의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허위영상물과 같은 완곡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딥페이크와 같은 대중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되기는 어렵지만,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적 인격권 침해를 포괄하여 처벌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된 제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고도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묘한 허위영

* m.han@police.ac.kr

상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경우보다는 피해자의 사진에 정액 등 채액을 문히거나 편집이 조잡하여 허위로 합성한 사진인지 쉽게 알 수 있는 합성물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는 한 사람이 허위영상물 제작부터 반포를 모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연락을 취한 일면식이 없는 복수의 가해자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를 분담하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자들은 허위영상물 편집을 의뢰하기 위한 목적의 미디어 플랫폼과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의 미디어 플랫폼을 이원화하여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규정을 평가하고 향후 성적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기술 촉진 이미지 기반 성학대, 딥페이크 영상, 성적 인격권 침해, 성폭력처벌법, 판결문 분석, 텔레그램

목 차

- I. 서론
- II. 허위영상물의 주요 특성
 - 1. 비동의 성적 대상화
 - 2. 기술 촉진 성학대
- III.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법제 검토
 - 1. 법률 용어 검토: ‘허위영상물’과 ‘딥페이크 영상’
 - 2. 개정 성폭력처벌법 주요 내용
 - 3. 연령에 따른 성적 인격권의 차등적 보호
- IV.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발생 및 처리 현황
 - 1. 분석자료
 - 2. 분석 결과
- V. 논의 및 결론

I. 서론

최근 성적 욕망 충족 또는 영리 추구 목적에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 텔레그램 등 미디어 플랫폼(media platform)에서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실태가 알려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¹⁾ 딥페이크(deepfake) 등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익히 알려진 것이었다.²⁾ 이에 2020년 3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

1) 법령에서는 복수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인 등(等)을 ‘딥페이크영상등’, ‘반포등’으로 붙여쓰기하나 본문에서는 한글맞춤법에 맞게 앞말과 일괄 띄어쓰기하였다.

2) 원은지 (2024, 9, 6). 엔번방 때도 있던 딥페이크, 국가 방관과 텔레그램이 키웠다.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57266.html>.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제14조의2 제1항)하는 행위,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14조의2 제2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이미 둔 바 있었다.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말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가 사회적 의제로 다시금 대두하였던 것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가 줄어들기는커녕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연예인이라는 해외 보안업체의 조사 결과가 보도될 정도로³⁾ 실제 인물의 사진·영상 또는 음성을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광범하게 확대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 의해서 ‘누구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따른 피해를 겪을 수 있으며 사람이 직접 제작하던 종래에 비하여 빠르고 대량으로 제작·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한층 어려워진 데다 심지어 자신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범행이 있었는지조차도 알기 어렵다는 데서 촉발된 사회적 불안감은 상당히 크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대응 방안으로 즉시 성폭력처벌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고 관련 논의가 진행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4년 9월 26일, 그리고 2024년 11월 14일에 연이은 입법적 결과가 도출된 것에서도 높은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실감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오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적 정비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

3) 윤나경 (2024, 8, 29). “한국,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국 1위…최대 피해자는 한국 가수”, <KBS뉴스>, URL: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47148>.

4)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하여 우리 헌법학계 및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를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권리’로 간주한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헌법재판소 2016.11.24. 선고 2015헌바

다. 다만,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대해 급증한 사회적 불안감을 다독이기 위해 서둘러 추진된 면이 없지 않다. 그 배경에는 입법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발생 실태를 다룬 선행연구가 부재한 면도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존 선행연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즉 불법 촬영물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 허위영상물과 관련하여 그간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는 허위영상물 탐지 및 판별 기술에 대한 전자·정보통신공학 계열의 연구(노하람·유제혁, 2024; 문경환 외, 2024; 전성우 외, 2024; 정해민 외, 2024), 허위영상물 대응 및 규제, 편집·반포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법학 계열의 연구(김재현, 2022; 김희정, 2024; 배상균, 2019; 신성원, 2023; 장우정·김주찬, 2020; 주현경, 2024; 허순철, 2022), 딥페이크 기술 담론에 대한 언론학 계열의 연구(김명훈·이상진, 2020; 최창욱·정유미, 2022)의 셋으로 크게 압축되는 가운데,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이미지 기반 성학대”(image-based sexual abuse; McGlynn & Rackley, 2017; Henry et al., 2019)로서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발생 실태에 초점을 맞춘 경험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딥페이크 및 디지털로 대체된 이미지 학대”(deepfake and digitally altered imagery abuse; Flynn et al., 2022) 피해 경험, 범위, 특성 관련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은 국외도 크게 다르지 않다.

136 결정)로 새기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대해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권리’에 한정된 성적 자기 결정권 논의는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젠더 권력관계를 간과하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가 다양한 층위에 걸쳐 있음에도 그 내용을 성행위에 관련된 것으로만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소은영, 2019)이 존재한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특성상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나 성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동의 또는 합의할 상황이나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래의 성적 자기 결정권 논의는 허위영상물로 인한 성적 침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적 자기 결정권보다는 개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를 가리키는 ‘성적 인격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즉, 성적 인격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의 하위범주이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수반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동의 또는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일체의 법익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생략된 기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규정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은 크게 1) 국회에 발의되었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 비교하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법제 검토와 2) 2020년 3월 24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신설 이래 지난 4년여간 동조 적용이 검토된 제1심 판결문 124건, 피고인 129명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 실태 분석의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규정을 평가하고 향후 성적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Ⅱ. 허위영상물의 주요 특성

1. 비동의의 성적 대상화

이미지 기반 성학대(image-based sexual abuse; McGlynn & Rackley, 2017; Henry et al., 2019)는 나체 또는 성적인 이미지를 피해자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제작·배포하거나 제작·배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통칭한다. 이때 ‘성학대’라는 표현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애화(sexualize)하고 모욕(humiliate)하며 위협(threat)하여 초래한 결과를 즉각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McGlynn & Rackley, 2017).

이미지 기반 성학대의 한 유형인 허위영상물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대상화(non-consensual sexual objectification)를 주된 특징으로 한다. 성적 대상화는 사람의 성적 기능이나 신체 부위를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도구와도 같이 여기거나 마치 사람 전체를 표상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을 가리킨다(Bartky, 1990). 성적 대상화는 도구화뿐만 아니라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아우른다(LaCroix & Pratto, 2015).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대상화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고, 취업 가능성을 낮추며, 모욕감·두려움·당황스러움·수치심 등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한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피해 실태를 토대로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지 기반 성학대 피해 실태에서 알려진 것을 유추 적용하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피해자는 피해 이후 디지털 플랫폼 이용을 극도로 경계하거나 이용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기도 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장소로 여기기도 한다(McGlynn et al., 2021).

나체 또는 성적인 이미지를 피해자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제작·배포하거나 제작·배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비단 허위영상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에 있어서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과 달리, 허위영상물은 이미지 또는 영상물을 이용한 일련의 행위에 피해자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더하여 거짓에 기반하여서라도 피해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모욕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구체화된 위해’(embodied harms; Henry & Powell, 2015) 정도가 크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피해 경험은 오프라인으로도 확장되어 디지털 플랫폼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도 꺼리게 되는 등 피해자가 느끼는 개인 차원의 불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 특히 허위영상물 편집·반포가 이름, 연락처, 주소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 스토킹, 괴롭힘, 모욕 등 일상생활에서의 추가 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Citron & Frank, 2014; Franks, 2017). 비동의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지는 허위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많은 경우 피해자에게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동의 또는 합의할 상황이나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자 처벌을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는 규제의 방식은 피해자가 허위영상물 관련 피해 자체를 애초 인지하지 못하거나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소지·시정하려는 의도에서 허위영상물을 편집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못한다.

2. 기술 촉진 성학대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과 동시에 고도화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하여 이미지 편집 도구가 간소화된 상황은 이미지 기반 성학대를 촉진하며 법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Citron & Chesney, 2019). 오늘날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나 디지털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도 이미지 또는 영상을 활용한 성학대는 가능하였고 적지 않게 발생하였으나, 급속도로 발전한 과학기술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모욕하며 학대하는 것을 한층 용이하게 하며 그 결과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한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와 과거 또는 현재에 성적 접촉을 수반하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거나 일면식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플랫폼에 게시된 피해자의 일상 속 이미지나 영상을 저장한 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몇 번의 조작만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손쉽게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이렇게 제작된 이미지나 영상은 미디어 플랫폼을 타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초국가적인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피해 양상은 전 세계인이 소수의 미디어 플랫폼을 공통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기인한 바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범죄 발생을 촉진하는데 악용되는 방법을 검토한 한 연구는 딥페이크를 가장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Caldwell et al., 2020). 허위영상물 편집·반

포는 바로 적절히 규제되지 않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과 미디어 플랫폼이 그 발생 및 피해 확산을 촉진한 대표적인 범죄 양상으로, 심각한 사회적 위협에 해당한다.

기술 촉진 성학대(technology-facilitated sexual abuse)로서의 허위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나 디지털 플랫폼이 성학대에 악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규제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기술 발전 속도는 규제를 통한 대응보다 빠르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정책과 접근방식으로 인해 허위영상물 관련 규제는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도 하다. 기술 촉진에 힘입어 빠르게 변화하는 이미지 기반 성학대 양상에 발맞추지 못하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피해의 광범성이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된 후에야 미디어 플랫폼 규제 강화 등 법제도 논의가 뒤따르는 상황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한층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Ⅲ.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법제 검토

1. 법률 용어 검토: ‘허위영상물’과 ‘딥페이크 영상’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의2 표제를 통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허위영상물’로 칭한다. 허위영상물이라는 성폭력처벌법의 다소 완곡한 표현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명명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범죄 또는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법적 규제는 없는 셈이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정보, 구체적으로 동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의 사실’에 허위영상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 딥페이크를 기반으로 생성된 피해영상물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허위영상물이라는 법률 용어는 대중 및 언론에서 성적인 목적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편집·반포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칭하여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라고 일컫고 있는 것과도 다소 괴리가 있다. 국외 학술 텍스트에서도 “딥페이크 이미지 기반 성학대”(deepfake image-based sexual abuse; Powell, 2022),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non-consensual sexual deepfakes; Lucas, 2022) 등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두 단어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를 그대로 흡수하는 동시에 “비동의/비자발적 포르노그래피”(non-consensual/involuntary pornography; Citron and Franks, 2014; Franks, 2017), “이미지 기반 성학대”(image-based sexual abuse; McGlynn & Rackley, 2017) 등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키는 종래 표현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술 촉진 성폭력(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Henry & Powell, 2015), 즉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및 미디어 플랫폼의 발달과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용이해지고 가속화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해당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법인지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고 국민이 범죄로 인식하는 상황을 최대한 그대로 명문화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법 해석의 재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결

코 단순하게 여길 수 없는 이슈다. 성폭력처벌법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등 구체적인 기술을 언급하지 않고 편집·합성·가공 등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 당시 논의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제20대 국회에서의 성폭력처벌법 개정 논의 당시 “인공지능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와 합성·편집 또는 가공이라는 행위태양으로 정”⁵⁾할 것인지가 검토되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어도 이후에 또 다른 기술로 한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굳이 이렇게 협소하게 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⁶⁾이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을 언급하는 것이 마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것을 우려하여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달리 성폭력처벌법에 딥페이크와 같은 직관적인 용어가 채택되지 않은 데에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순화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법령이 되게 한다”⁷⁾는 선한 취지 내지 의도적인 외래어 순화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에도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로는 인공지능이 전제되었으나, 해당 기술의 명칭이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용어 변경은 검토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기 위해 딥페이크와 같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실제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거나 복수의 이미지가 결합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정액을 뿌린 것처럼 합성”⁸⁾하거나 “피해자의 사진 위에서 자위하는 영상물”⁹⁾, “편집이 조잡하여 허위로 합성한 사진인지 쉽

5) 제20대 국회 제376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2020년 3월 3일 자), 35쪽.

6) 제20대 국회 제376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2020년 3월 3일 자), 36쪽.

7) 권재일(2009). 알기 쉬운 법령과 어휘 다듬기의 실제. 법제 586호. URL: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pageIndex=2&mpbleg_pst_seq=131061.

8) 울산지방법원 2023.9.26. 선고 2023고합200 판결.

9) 울산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1고합159 판결.

게 알 수 있”¹⁰⁾는 것, 다른 사진과의 합성 없이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위가 부각되도록 사진을 편집”¹¹⁾한 것이나 “가슴 부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 유두가 도드라져 보이도록 사진을 편집”¹²⁾한 것 모두 허위영상물로 의율되고 있다.

허위영상물과 같은 완곡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딥페이크와 같은 대중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되기는 어렵지만,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적 인격권 침해를 포괄하여 처벌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나 대중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구체적인 판결례를 접하기 전에는 허위영상물을 딥페이크영상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쉽고,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오인할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엄격히 해석하여 영상통화 도중 상대방의 나체를 녹화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¹³⁾ 전술한 사례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법원의 허위영상물 판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우려되는 면이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게 편집된 형태도 아니라는 점에서 딥페이크영상과 전술한 사례의 영상물을 구분할 실익이 있다고도 새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한 이들 행위의 가벌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은 명확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허위영상물과 같은 완곡한 용어 사용이 갖는 한계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그대로 법문에 반영하였을 때의 장점을 함께 언급하여 두되, 일단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허위영상물’로 일관되게 표현하고자 한다.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8.23. 선고 2023고단868 판결.

11) 인천지방법원 2023.8.17. 선고 2023고단236 판결.

12) 인천지방법원 2023.8.8. 선고 2022고단7432 판결.

13)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2. 개정 성폭력처벌법 주요 내용

2024년 9월 26일 개정, 10월 16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허위영상물 관련 규제를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 촬영물 처벌과 동일하도록 ‘반포 등을 할 목적’에 대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두었던 것을 삭제하고(제14조의2 제1항),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이나 편집·합성·가공 외에도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14조의2 제4항 신설),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표 1〉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포 등을 할 목적’에 대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유지,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태양 추가 여부 및 법정형, 영리 목적 편집·반포 등 법정형 상향, 경과규정 설정 여부에 대해 비교한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반포 등을 할 목적’에 대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태양을 추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법정형을 두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편집·반포 등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정도로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며(7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태양 추가를 제외하면 12건의 일부개정법률안 간에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단적으로, 대다수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포 등을 할 목적’에 대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불법 촬영물보다 약간 낮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태양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영리 목적 편집·반포 등 기존에 처벌하고 있던 행위태양의 법정형 상향은 고민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으며,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처벌의 실제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한 후 ‘가짜’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적 인격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아 경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간주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1〉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연 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행위태양 추가		편집· 반포 등 법정형	영리 목적 법정형	경과 규정
					소지 등	법정형			
1	3241	이해식의원 등 10인	2024. 8.27	○	○	2년/ 2천만원	x	x	○ (6개월)
2	3244	김한규의원 등 10인	2024. 8.27	○	○	1년/ 1천만원	x	x	○ (6개월)
3	3245	김남희의원 등 10인	2024. 8.27	x	○	2년/ 2천만원	x	x	○ (6개월)
4	3247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 8.27	○	○	2년/ 2천만원	x	x	○ (6개월)
5	3251	황명선의원 등 11인	2024. 8.27	○	○	3년/ 3천만원	x	x	○ (6개월)
6	3314	조배숙의원 등 11인	2024. 8.28	○	○	3년/ 3천만원	7년	3년 이상	x
7	3317	권칠승의원 등 12인	2024. 8.28	x	○	3년/ 3천만원	7년	3년 이상	○ (3개월)
8	3356	이연희의원 등 11인	2024. 8.29	x	○	2년/ 2천만원	x	x	x
9	3395	서영교의원 등 12인	2024. 8.29	○	△ (소지)	2년/ 2천만원	6년	x	○ (6개월)
10	3423	임미애의원 등 13인	2024. 8.30	○	○	2년/ 2천만원	7년	10년	x
11	3517	김용민의원 등 18인	2024. 9.2	○	○	3년/ 3천만원	7년	3년 이상	x
12	3546	한지아의원 등 11인	2024. 9.2	○	○	2년/ 2천만원	x	x	○ (6개월)

비고: 2024년 9월 26일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반영된 부분을 음영 표시함

3. 연령에 따른 성적 인격권의 차등적 보호

종래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규제는 피해자의 연령, 즉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가, 또는 성인인가에 따라 차이를 두어 왔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규제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대한 규제에는 용어 외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며, 2024년 9월과 11월 연이은 성폭력 처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하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청소년성보호법 제1조) 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법정형이 높고 타법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나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처벌 규정이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 관련 처벌 규정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러한 차이의 단적인 예다.¹⁴⁾

형을 규정하는 방식 외에도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간에 두드러지는 차이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행위태양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2>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 간 행위태양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장 많은 행위태양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성보호법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 판매, 대여, 배포, 제공, ▷ 전시, 상영뿐만 아니라 ▷ 소지, 구입, 시청, ▷ 운반, 광고, 소개, ▷ 제작, 수입, 수출, ▷ 알선까지

14) 이와 관련, 제20대 국회에서의 성폭력처벌법 개정 논의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성폭력처벌법에서의 법정형이 “아청법보다 높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아청법이 더 올라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정형의 균형이 도모될 필요가 있겠다”(제20대 국회 제377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20년 4월 28일 자), 11쪽)라고 언급,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인 여성에 대한 보호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차등하여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표 2〉 현행법상 딥페이크 기반 범죄 행위태양 비교

법률 및 조문	청소년성보호 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공직선거법 제72조의8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행위 태양	배포	반포	반포	유포	배포
	판매	판매	판매		판매
	대여	임대	임대		임대
	제공	제공	제공		
	전시	전시	전시		전시
	상영	상영	상영	상영	
	소지	소지	소지		
	구입	구입	구입		
		저장	저장		
	시청	시청	시청		
			편집	편집	
			합성		
			가공		
	제작			제작	
	수입				
	수출				
	운반				
	광고				
	소개				
	알선				
					도달
				게시	
개수	16	10	13	5	5

비고: 2024년 9월 26일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된 행위태양을 굵은 글씨로 표시함

총 16개 행위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2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 반포, 판매, 임대, 제공, ▷ 전시, 상영, ▷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처벌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배포’ 및 ‘대여’는 각각 성폭력처벌법의 ‘반포’ 및 ‘임대’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운데,¹⁵⁾ 청소년성보호법에 있는 ▷ 운반, 광고, 소개, ▷

제작, 수입, 수출, ▷ 알선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 관련 행위태양에는 없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 관련 행위태양에 있는 ‘저장’이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없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나, 연령에 따라 성적 인격권이 차등적으로 보호되고 성적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차등적으로 처벌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최근의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양상은 연령에 따른 구분 실익을 논하는 것 자체를 무용하게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인격권 못지않게 성인 여성의 성적 인격권 또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성폭력처벌법이 직전 개정으로부터 한 달여 만인 2024년 11월 14일 재차 개정되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만 허용하고 있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허용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범죄자를 검거하기가 곤란하다는 상황이 뒤늦게 인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발생 및 처리 현황

1. 분석자료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주요 특성 및 처벌 상황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2020년 3월 24일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부

15) 성폭력처벌법 개정 논의 당시에도 전문위원이 “‘유포’ 또는 ‘반포’로 서로 사용하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법무부에서도 “‘반포’에서 ‘유포’로 변경하는 추세”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번에는 ‘반포’로 하고 나중에 다 바꾸”자는 의견도 개진되었으나, 현재와 같이 유포, 반포, 배포가 법령상 혼재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제20대 국회 제376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2020년 3월 3일자), 39쪽).

터 2024년 9월 2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 시점까지 약 4년 6개월간 동법 제14조의2가 적용되어 선고 및 공개된 제1심 판결문 124건을 수집하였다. 성폭력처벌법상 제14조의2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제작·유포되는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촬영물·영상물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면은 있으나 해당 적용법조로 의율된 사건들을 추출하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발생 및 처리 특성을 살펴보기에는 용이하다. 판결문 수집에는 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단일죄에 한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된 모든 제1심 판결문을 대상으로 하였다.¹⁶⁾

주지할 점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로,¹⁷⁾ 많은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되었으며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¹⁸⁾ 본 연구에서 수집한 제1심 판결문 자료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된 사건들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피고인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판결문을 분석자료로 사용함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문 자료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건별로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개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

판결문 한 건에서 공범·교사범 등 복수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이루

16) 제2심(항소심) 법원의 판결 또한 하급심 판결에 해당하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라는 구체적인 범죄의 발생을 살펴봄에 있어 제1심과 더불어 제2심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상황이 두 번 집계되는 결과가 됨에 따라 제2심은 제외하고 제1심만 분석 범위에 포함하였다.

17)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에 요청해 공개한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검거된 허위영상물 피의자 120명 중엔 10대가 91명(75.8%)이었으며, 10대 피의자는 2022년에도 61%, 2024년 1~7월 73.6%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선옥 (2024, 8, 29). ‘놀이문화처럼 번져’...딥페이크 성범죄 왜 유독 청소년들 많았나?, 〈BBC NEWS 코리아〉, URL: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gl8zpd7e0o>.

18)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어진 경우를 고려할 때, 124건의 판결문에 포함된 피고인 수는 총 129명이다. 연도별 피고인 수는 2021년 34명(26.4%), 2022년 38명(29.4%), 2023년 47명(36.4%), 2024년 10명(7.8%)으로, 2024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비식별화가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 그 수가 적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수를 기준으로 분석 및 기술하였다.

피고인은 모두 남성인 데 비해 피해자는 남성 연예인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다. 피고인이 소년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18명(14.0%)이었으며, 피고인 중에는 80세가 넘는 고령도 있다.¹⁹⁾ 연예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한 것이 확인된 피고인은 25명(19.4%)이었다.

2. 분석 결과

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발생 특성

(1)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의뢰’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후 반포 등의 후행 행위로 나아가는 행위자도 많지만, 상당수의 피고인이 허위영상물 편집을 의뢰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과 같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를 분담하고 있다. 소위 ‘지인 능욕’, ‘지인 합성’, ‘지인 제보 박제’ 등으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합성을 의뢰”²⁰⁾하면 “불상자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고 전송받은 불상의 피해자 사진을 자신의 아이패드 에 띄운 뒤, 그 아이패드 위에 자신의 정액을 사정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허위영상물을 DM(Direct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9.15. 선고 2021고단1881 판결.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11.26. 선고 2021고단2026 판결.

Message)으로 전송”²¹⁾하거나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는 지역 등 인적 사항과 얼굴 사진, 여성의 가슴 사진, 성기 사진을 함께 편집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²²⁾하는 것을 가리킨다.

허위영상물 편집을 의뢰하는 피고인은 허위영상물 편집자를 알지 못하고, 허위영상물 편집자는 허위영상물 편집의 대상이 된 피해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에 한데 얹혀 하나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얼굴이나 이름 등 개인정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음부, 가슴 등의 이미지와 결합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화면에 남성이 성기를 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된다. 얼굴이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식별되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지만, 나체나 음부, 가슴 등의 신체 부위가 허위영상물 편집에 이용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기도, 피해자임을 주장하기도 어렵다.

분석에 포함된 제1심 판결문의 피고인 129명 중 20명(15.5%)은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합성을 의뢰하였으며, 19명(14.7%)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역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합성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편집한 허위영상물을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의뢰’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의뢰한 것이라면 그가 피해자의 사진 등 정보를 전달한 편집자 또는 반포자가 있고, 피고인이 편집 또는 반포하였다면 그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 정보를 전달한 의뢰자가 있을 것인데, 판결문에는 이 중 어느 일방만을 적시하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의뢰가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 과정 가운데 피고인이 특정된 부분만 잘라내어 다루고 있다. 이는 곧 수사 단계에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의뢰’ 양 행위자를 모두 검거

21) 창원지방법원 2023.8.17. 선고 2023고합44 판결.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6.10. 선고 2022고단661 판결.

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2) 복수의 미디어 플랫폼 이용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와 관련하여 딥페이크라는 인공지능 기술 외에도 의뢰자가 피해자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일면식이 없는 편집자 또는 반포자에게 전달하며, 편집된 허위영상물 게시 및 반포가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주지되어야 한다. 특히 전술한 ‘지인 능욕’의 경우 “페이스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의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캡처한 후,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①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몸 사진 및 ② 성명불상의 여성이 남성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몸 사진에 합성한 사진”²³⁾을 받는 것과 같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텀블러 등의 SNS에서 피해자의 게시물로부터 사진 등을 수집하고,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편집자 또는 반포자에게 전달하는 패턴을 보인다. 또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텔레그램 방을 홍보하여 구독자 등을 모집하고, 위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허위영상물 판매 또는 공유가 가능함을 알리는 것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에서, 실제 허위영상물 판매 또는 공유는 텔레그램에서 하고 허위영상물 편집 ‘의뢰’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지만, 허위영상물 게시 등 반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는 등 복수의 SNS를 쓰고 연락 창구를 달리하는 이원화된 패턴을 보인다.

제1심 판결문에는 피고인 관련 정보의 상당 부분이 비식별화되어 있거나 반포 등이 이루어진 미디어 플랫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범행에 이용된 미디어 플랫폼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미디어 플랫폼 명칭이 판결문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8.23. 선고 2023고단770 판결.

상 확인되는 것 중 가장 많은 피고인이 이용한 미디어 플랫폼은 텔레그램(55명, 42.6%)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트위터(10명, 7.8%), 카카오톡(7명, 5.4%)으로 나타난다.

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처벌 특성

(1) 높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

2024년 9월 26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문을 통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처벌 수준을 살펴보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단일죄에 해당하는 피고인 41명 중 절반가량(20명, 48.8%)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9명(22.0%)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나, 허위영상물 관련 법정형 상향이 선고형 상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가담한 기간이나 허위영상물 개수 또는 편집·반포 횟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목적으로 하는 채널 운영 여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중에는 3년 10개월에 걸쳐 자신이 직접 허위영상물 공유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하여 총 2,293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5,808개의 허위영상물을 업로드한 경우도 있다.²⁴⁾ 허위영상물 공유 채널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며 각각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편집합성물 4,312개,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편집합성물 1,690개를 게시하여 배포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²⁵⁾ 허위영상물 공유 채널을 3개 운영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294차례, 2023년 1월부터

24) 제주지방법원 2024.1.11. 선고 2023고합202 판결.

25) 인천지방법원 2023.10.20. 선고 2023고합168 판결.

2023년 4월까지 2,099회에 걸쳐 허위영상을 업로드하고, 2022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975차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각 채널에 1,975차례 및 3,422차례에 걸쳐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게시하는 등 자신이 직접 제작·편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배포·반포하고 채널 참여자들과 함께 공동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마찬가지다.²⁶⁾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연도에 비해 수집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24년을 제외하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저지른 피고인 중 단일죄에 해당하는 비율은 매년 30%가량으로 나타난다. 129명 중 50명(38.8%)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이 49.6%(64명)로 가장 높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8.5%(11명)로 확인된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 형량의 평균값은 36.6개월, 중위값은 24개월이었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평균값 및 중위값 모두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3〉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제1심 판결문 단일죄 여부 및 선고 형종

연도		적용법조		형종				계
		경합	단일죄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기타	
2021	명	23	11	14	14	4	2	34
	(%)	(67.7)	(32.4)	(41.2)	(41.2)	(11.8)	(5.9)	(100.0)
2022	명	25	13	20	15	2	1	38
	(%)	(65.8)	(34.2)	(52.6)	(39.5)	(5.3)	(2.6)	(100.0)
2023	명	33	15	12	29	5	2	48
	(%)	(68.8)	(31.3)	(25.0)	(60.4)	(10.4)	(4.2)	(100.0)
2024	명	8	2	4	6	-	-	10
	(%)	(80.0)	(20.0)	(40.0)	(60.0)			(100.0)
계	명	89	41	50	64	11	5	129
	(%)	(68.5)	(31.5)	(38.8)	(49.6)	(8.5)	(3.9)	(100.0)

비고: 선고유예, 무죄를 기타로 분류함

26) 제주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3고합157 판결.

한편,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증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129명 중 60명(46.5%)에 대해서는 몰수, 12명(9.3%)에 대해서는 폐기, 12명(9.3%)에 대해서는 추징이 선고되었다. 추징액은 최저 15만 원부터 최고 84,870,225 원으로, 평균 10,289,697원에 이른다.

(2)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엄격한 해석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편집 등’,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징역형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나,²⁷⁾ 기존 성폭력처벌법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한 허위영상물 편집의 경우에만 가벌성을 인정함에 따라 사실상 1유형에만 해당하는 판결례는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지인 능욕’ 합성물 제작을 의뢰하고 의뢰한 합성물을 제공받아 소지하는 것이 2유형(반포 등) 없는 1유형(편집 등)에 해당한다.²⁸⁾ 한편, 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에 해당하는 피고인도 19명(14.7%)으로 나타나, 전술한 추징액에서 볼 수 있듯 놀이이자 산업이 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피고인의 유죄 성립에 결정적이라는 점이 판결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합성한 영상물을 회사 공용컴퓨터 또는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공용컴퓨터를 통해 영상물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²⁹⁾ 또한,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송할 목적으로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합성물

27)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URL: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

28) 청주지방법원 2023.6.21. 선고 2022고단2088 판결.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5.24. 선고 2022고단3554 판결.

을 전송한 경우에 피해자 본인에게 합성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합성물을 만들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송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반포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³⁰⁾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삭제한 것은 반포를 직접적으로 목적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위영상물 편집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학대에 노출되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에서 입법 정책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허위영상물 반포를 시도하였거나 반포된 후에 가해자를 처벌해 왔던 형사사법기관이 법률 개정 이후 2유형(반포 등) 없는 1유형(편집 등)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 중히 처벌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과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면이 있다. 단적으로 말해, 법률 개정 이전에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였으나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려웠던 2유형(반포 등) 없는 1유형(편집 등), 법률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된 소지·구입·시청·저장 행위는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소지·구입·시청·저장 행위를 인지하여 신고하거나 허위영상물이나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반포하여 입건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허위영상물의 편집 또는 소지·구입·시청·저장이 있었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휴대전화 등 기기를 정기적으로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소지·구입·시청·저장 행위는 다시금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반포 관련 행위 처벌에 포괄될 수밖에 없을 개연성이 높다.

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10..20. 선고 2022고합38 판결.

V. 논의 및 결론

성적 인격권은 인격체인 개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로,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를 가리킨다. 2022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기술 발달에 따라 성적 대상화 방식이 비정형화·광범위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왜곡된 성편향의 표출로 현실 또는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제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에 ‘성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형사사법 프로세스가 규제 지체 없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즉각적이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에 포함된 ‘성적 인격권’을 독립된 보호법익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즉,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의 전형적인 방식인 정액·타액·소변 등 체액 테러, 지인 능욕 등 성적 공격, 언어적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비접촉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법제의 미비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³¹⁾

본 연구는 2020년 3월 24일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2024년 9월 2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 시점까지 약 4년 6개월간 동법 제14조의2가 적용되어 선고 및 공개된 제1심 판결문 124건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2022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지적하였던 문제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된 제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고도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묘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경우보다는 피

31) 법무부 보도자료 (2022, 1, 28). 『신중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 발표 -, URL: https://viewer.moj.go.kr/result/bbs/182/temp_1643355350602100.view.xhtml?

해자의 사진에 정액 등 채액을 묻히거나 편집이 조잡하여 허위로 합성한 사진인지 쉽게 알 수 있는 합성물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 사람이 허위영상물 제작부터 반포를 모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연락을 취한 일면식이 없는 복수의 가해자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를 분담하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등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는 하나의 놀이이자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려는 조치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성범죄 피해자 개인의 존엄성 및 인격권과 맞닿아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용어를 폭넓게 해석하여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기반 성학대를 의율하는 것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나, 성적 인격권 침해라는 보호법익을 명확히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때의 인격은 강학상 개념이 아닌, 현실적인 쟁점이다. 비동의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지는 허위영상물의 특성상 많은 경우 피해자에게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동의 또는 합의할 상황이나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상기할 때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로 이해”³²⁾되는 종래의 성적 자기 결정권 논의로는 피해자가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가운데 성적인 학대에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확산하는 동시에 이를 악용한 범죄 또한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미디어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성적 대상화 피해가 미디어 플랫폼 속에서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는 오프라인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성적 인격권은 온·오프

32) 헌법재판소 2016.11.24. 선고 2015헌바136 결정.

프라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자들은 허위영상물 편집을 의뢰하기 위한 목적의 미디어 플랫폼과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의 미디어 플랫폼을 이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방지하기 위한 미디어 플랫폼 규제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범행 단계에서 각 미디어 플랫폼이 주로 이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미디어 플랫폼 별로 차등적인 규제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제1심 판결문 분석 결과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로, 많은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되었으며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된 사건들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에 일정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단일죄에 해당하는 피고인 41명 중 절반가량(20명, 48.8%)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9명(22.0%)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이 허위영상물 관련 법정형 상향이 선고형 상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유효한 의문을 제기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피고인의 유죄 성립에 결정적으로 고려해 온 법원의 선고 관행도 확인되었다. 2024년 9월 2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삭제된 가운데, 그간 형사사법기관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를 중심으로 검토해 왔던 관점을 탈피하여 향후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따른 소지·구입·시청·저장 행위의 가벌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인식할 것이 요청된다. 아울러, 대상을 가리지 않고 미디어 플랫폼상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상황을 고려할 때 성적 인격권 보호와 성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연령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동·청소년의 성적 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의 성적 인격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김명훈·이상진. (2020). 이슈관심주기를 적용한 디지털 성범죄 정책변동 분석: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을 사례로. 치안정책연구, 34(3), 7-40.
- 김재현. (2021). 딥페이크(deep fake)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입법학연구, 18(1), 243-276.
- 김희정. (2024).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대한 법정정책 시사점 - 외국의 법정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13(3), 97-128.
- 노하림·유재혁. (2024). Visual Saliency 기반의 딥페이크 이미지 탐지 기법.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12(1), 128-140.
- 문경환·옥수열·서정일·이석환. (2024). Meta Pseudo Labels 기반 딥페이크 영상 검출.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7(1), 9-21.
- 배상균. (2019).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43(3), 169-187.
- 소은영. (2019).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에 관한 재검토. 이화젠더법학, 11(3), 41-65.
- 신성원. (2023).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4), 147-168.
- 원은지 (2024, 9, 6). 엔번방 때도 있던 딥페이크, 국가 방관과 텔레그램이 키웠다.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57266.html>.
- 윤나경 (2024, 8, 29). “한국,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국 1위…최대 피해자는 한국 가수”, <KBS뉴스>, URL: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47148>.
- 장우정·김주찬. (2020).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국내외 입법동향과 형사법적 수용문제 - 딥페이크 포르노(Deepfake Pornography)를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33(2), 273-306.
- 전성우·김지영·박진모·정희경. (2024). GAN과 DCGAN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기반 위조 영상 판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4(7), 126-134.
- 정해민·조혁주·김우주·이광연. (2024). 멀티스케일 특성을 활용한 비전 트

- 랜스포머 기반 딥페이크 탐지에 관한 연구. *지능정보연구*, 30(2), 275-285.
- 주현경. (2024). 딥페이크 기술의 사회적 위험과 규제 방안 - 딥페이크 이용 범죄를 중심으로 -. *가천법학*, 17(3), 261-306.
- 최창욱·정유미. (2022). 국내외 언론이 바라본 딥페이크 기술.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3(5), 893-904.
- 허순철. (2022). 유튜브 딥페이크(deepfake) 영상과 허위사실공표. *미디어와 인격권*, 8(1), 1-47.
- Bartky, S. L. (1990). *Femininity and domination: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oppression*. New York: Routledge.
- Caldwell, M., Andrews, J. T., Tanay, T., & Griffin, L. D. (2020). AI-enabled future crime. *Crime Science*, 9(1), 1-13.
- Citron, D. K., & Chesney, R. (2019). Deep fakes: A looming challenge for privacy, democracy, and national security. *California Law Review*, 107(6), 1753-1819.
- Citron, D. K., & Franks, M. A. (2014). Criminalizing revenge porn. *Wake Forest Law Review*, 49, 345-391.
- Flynn, A., Powell, A., Scott, A. J., & Cama, E. (2022). Deepfakes and digitally altered imagery abuse: A cross-country exploration of an emerging form of image-based sexual abuse.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62(6), 1341-1358.
- Franks, M. A. (2017). Redefining “revenge porn” reform: A view from the front lines. *Florida Law Review*, 69(5), 1241-1337.
- Henry, N., & Powell, A. (2015). Embodied harms: Gender, shame, and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21(6), 758-779.
- Henry, N., Flynn, A., & Powell, A. (2019). Image-based sexual abuse: Victims and perpetrators.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572), 1-19.
- LaCroix, J. M., & Pratto, F. (2015). Instrumentality and the denial of personhood: The social psychology of objectifying others. *Revue internationale de psychologie sociale*, 28(1), 183-211.

- Lucas, K. T. (2022). Deepfakes and domestic violence: Perpetrating intimate partner abuse using video technology. *Victims & Offenders*, 17(5), 647–659.
- McGlynn, C., & Rackley, E. (2017). Image-based sexual abuse.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37(3), 534–561.
- McGlynn, C., Rackley, E., Johnson, K., Henry, N., Flynn, A., Powell, A., Gavey, N., & Scott, A. (2019). *Shattering Lives and Myths: A Report on Image-Based Sexual Abuse* (The UK report from an Australian Research Council funded project (DP170101433) Revenge Pornography: The Prevalence and Nature of Non-Consensual Imagery and the Implications for Law Reform). URL: <https://durham-repository.worktribe.com/preview/1605261/28683.pdf>.
- Powell, A. (2022).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Reflections on the concept. In *Rape* (pp. 143–158). Routledge.

ABSTRACT**Violation of Sexual Integrity on Media Platforms****- Deepfake Image-Based Sexual Abuse -**

Han, Min Kyung

Professor, Department of Criminology,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Like other forms of image-based sexual abuse, the editing and distribution of fabricated images involves non-consensual sexual objectification of the victim. The delay in adapting legal and media platform regulations to the rapidly evolving nature of such abuse highlights issues in both offender punishment and victim protection, particularly in cases of fabricated image distribution, including deepfak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occurrence and handling of fabricated image distribution cases, which was overlooked in the rushed process of revising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The research methods and content are divided into two main parts: 1) a comprehensive review and comparison of legislative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e Act related to fabricated image distribution via media platforms, and 2) an analysis of 124 court decisions involving 129 defendants to examine the violation of sexual dignity rights on media platforms over the past four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Article 14-2 of the Act on March 24, 2020.

Although the term “fabricated images and videos” may be less intuitively understood compared to popular terms like “deepfake,” it is

advantageous for comprehensively penalizing violations of sexual dignity rights on media platforms. Analysis of first-instance rulings where Article 14-2 was applied revealed that, contrary to public perceptions of using advanced AI technology, the majority of cases involved crude fabrications, such as adding bodily fluids like semen onto victim photos, which were easily identifiable as fake, rather than involving sophisticated deepfake technology.

Additionally, violations of sexual dignity rights on media platforms do not typically involve a single person producing and distributing fabricated images and videos; rather, multiple offenders, who are often strangers connected through such platforms, share the tasks of editing and distributing fabricated images and videos. These offenders often separate the platforms used for commissioning fabrications from those used to post such images. Accordingly, the recent amendments to fabricated image distribution regulations are evaluated and improvements to the legal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rotection of sexual dignity rights are suggested.

Keywords: Fabricated Image Editing and Distribution, Technology-Facilitated Image-Based Sexual Abuse, Deepfake Videos, Violation of Sexual Integrity,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Court Decision Analysis, Telegram

[논문투고일 2024. 10. 28. 논문수정일 2024. 11. 26. 게재확정일 2024. 12. 5.]